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유의사항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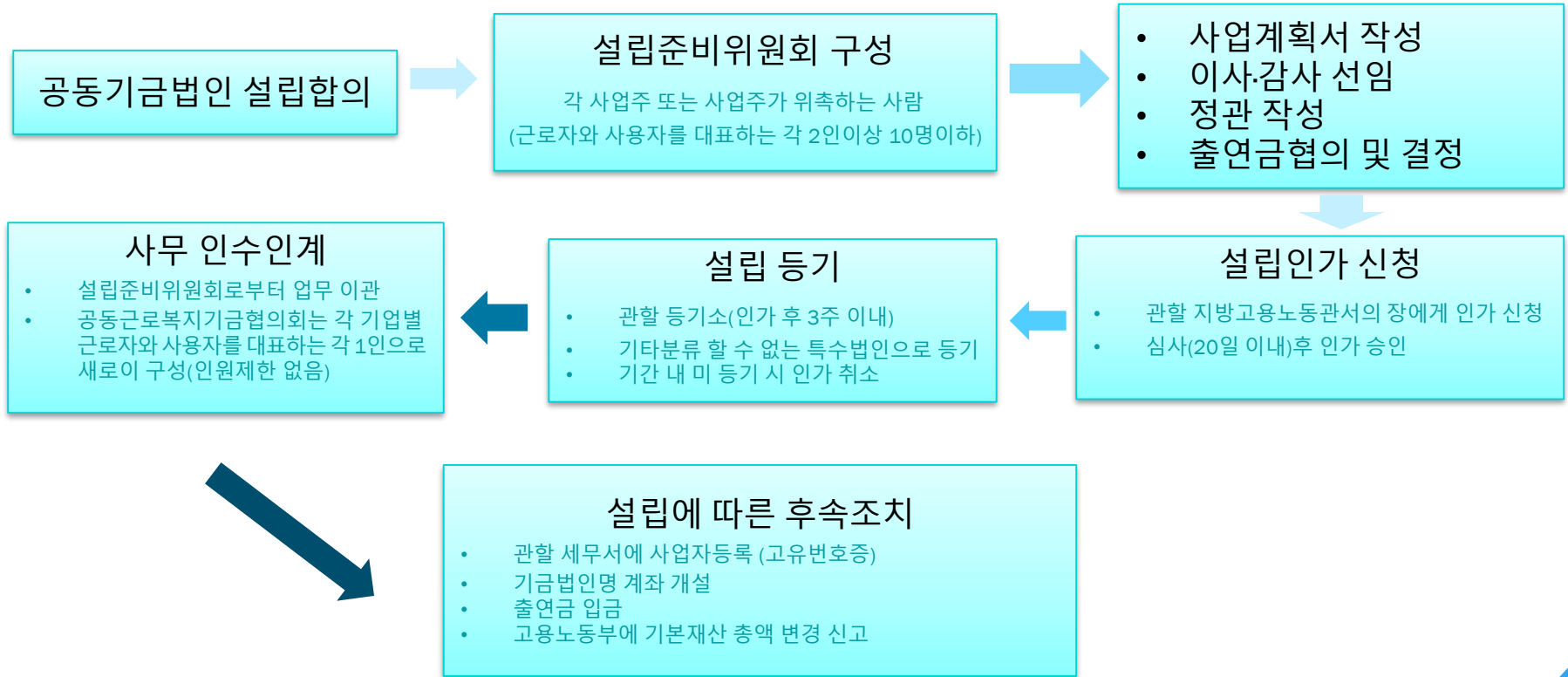
1.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

❖ 사업의 개요

-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법인을 설립(기타 분류할 수 없는 특수법인)**
 - 각 사업주 간 출연금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공동으로 출연하여야 하므로 참여하는 사업주는 일부라도 출연하여야 함
 - 공동기금에 참여하는 사업주 이외의 자도 출연할 수 있음
(대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은 중소기업력업체 간 구성된 공동기금에 출연 가능)

2.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절차도



- ◆ 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운영 등은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문의
☎ 국번없이 1350
- ◆ 근로복지기금 지원금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 052-704-7332 / 7304

3. 공동기금법인을 설립하거나 운영 시 주의사항

- ❖ **(참여기업의 출연여부)** 공동기금법인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참여기업의 출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그러한 여건이 되는지 충분한 검토 필요
- ❖ **(기금의 집행)** 기금 법인은 정관에 명시된 사업내용에 따라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참여회사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집행 기준에 따라 복지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참여기업별로 각자 다른 복지 사업 수행 불가**)
 - 통근버스 운영비, 상여금 등 업무와 관련된 항목에는 집행 불가
 - 지원금 집행내역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점검을 받아야 함
 -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지원금 환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공동기금법인 운영 전반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지도 감독을 받음
- ❖ **(기금법인 집행의 투명성 제고)** 기금법인은 운영을 위해 1개의 계좌 사용이 바람직하며, 출연금과 지원금의 구분 관리 등 예외적인 사유 외에 '참여기업별 각자 다른 복지사업의 수행이 불가 한데 이를 목적으로 **참여기업별 복지사업 계좌(기금법인 기준으로 2개 이상의 계좌)관리는 불가함**
- ❖ **(복지사업 및 지원기준 마련)**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준비위원회 회의를 통해 기금 법인이 시행할 복지사업의 내용과 각 복지사업의 명확한 집행기준 마련

4. 지원금으로 허용되지 않는 목적사업

❖ (대부사업)

- ☞ 다만, 기금법인이 지원금을 최초 지급받는 시점부터 지원금과 기금법인 출연금의 계좌가 별도 구분되어 있으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3항에 의거하여 지원금이 아닌 기본재산으로 근로자 대부사업 수행 가능

❖ (임원 및 대표에게 복지비용 지출)

- ☞ 근로자가 아닌 임원과 대표 등에게 복지비용 지출 불가

❖ (임금대체적 성격의 사업)

- ☞ 휴가비, 명절상여금, 우수사원 포상금 및 격려금, 차량유류비 등으로 지출 불가

❖ (사회단체 등에 기부금 지출)

- ☞ 결손가정, 장애인, 불우이웃돕기 성금 지급으로 지출 불가

5. 공동기금법인이 할 수 있는 복지사업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 ✓ 근로자 재산 형성을 위한 지원
- ✓ 장학금, 재난구호금, 경조금 등의 지급 및 그 밖에 근로자의 생활원조
- ✓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 ✓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 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 근로자의 복지 증진
- ✓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의 지원,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 ✓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 근로복지기금 지원금의 지원요건이 되는 복지사업과는 상이 할 수 있음

6. 공동기금에 대한 정부의 지원

❖ 목적

- 대-중소기업(원-아형) 간 상생역력을 통해 노동시장 내 복지격차 완화와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의 복지 증진 도모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설립·출연 유형 및 지원한도)

▪ 둘 이상의 기업 간 출연

- 대기업+중소기업 / 중소기업+중소기업(상생형중견기업 포함*) 등

구분	참여 사업장 수 또는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등 근로자 수			
	5개소 미만 또는 100인 미만	5개소 이상 10개소 미만 또는 100인 이상 500인 미만	10개소 이상 30개소 미만 또는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30개소 이상 또는 1,000인 이상
총 한도	2억원	5억원	10억원	20억원
기간	설립일부터 3년	설립일부터 3년	설립일부터 4년	설립일부터 5년

※ 참여사업장 수가 50개소 이상이고,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등 근로자 수가 1,500인 이상인 지역단위 또는 산업단위 공동기금인 경우
설립일로부터 7년, 30억 원 한도

▪ 대기업(또는 원청)이 중소기업 공동기금에 출연

구분	참여 사업장 수 또는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 수			
	5개소 미만 또는 100인 미만	5개소 이상 10개소 미만 또는 100인 이상 500인 미만	10개소 이상 30개소 미만 또는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30개소 이상 또는 1,000인 이상
한도	매년 2억원	매년 3억원	매년 5억원	매년 10억원
기간	매년 한도 내에서 지원			

※ 상생협약 체결에 따라 대기업(또는 원청)이 출연액을 증액한 경우, 지원금액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지원 (협약을 체결한 해부터 3년간)

▪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상생영증견기업 포함) 공동기금에 출연

구분	참여 사업장 수 또는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등 근로자 수		
	10개소 미만 또는 500인 미만	10개소 이상 30개소 미만 또는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30개소 이상 또는 1,000인 이상
한도	매년 2억원	매년 4억원	매년 6억원
기간	설립일부터 3년(매년 한도 내에서 지원)		

※ 상생협약 체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연 확대 시, 협약을 체결한 해부터 3년간 지원

※ 공동근로복지기금 소급 지원신청 가능

- 참여기업 출연: 기금법인별 설립일부터 3년 ~ 7년(기금법인 규모별로 상이)
- 대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출연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7.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금 지원 절차

1. 참여기업 등이 공동기금법인에 출연 및 출연약정



2. 기금법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지원신청



3. 공단이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4. 참여기업 등이 출연약정한 출연금의 출연완료



5. 공단의 지원결정을 안 날부터 30이내에 지원금 지급 신청



6. 공단은 출연금액 **확인*** 후 기금법인에 지원금 지급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상의 출연약정(예정)금액 이상으로
출연하지 않은 경우 **지원결정 취소**

8. 공동기금 지원 주요 안내사항

- i. 상생협약 체결에 따른 출연 확대 시 지원한도 확대 및 지원기간 연장
- ii. 공동기금 지원결정 시 지원한도 정의 명확화
- iii. 사업계획서 변경 신고 의무화
- iv. 집행실태 점검 후 사후관리 절차
- v. 소급 지원신청에 대한 지원결정 기준
- vi. 지원금 목적외 사용 등에 대한 지원제한 기준

✓ **상생협약 체결에 따른 출연 확대 시, 지원한도 확대 및 지원기간 연장**

① **상생협약 체결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에 대기업(또는 원청)의 출연 증액 시**

* **한도 : 최대 10억원 → 최대 20억원 한도로 확대(협약을 체결한 해부터 3년간)**

② **상생협약 체결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시**

* **기간 : 기금법인 설립일로부터 3년 → 협약을 체결한 해부터 3년으로 기간연장**

✓ **공동기금 지원결정 시 지원한도 정의 명확화**

① **공동기금 지원금액 지원율은 신청금액의 100%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심사 결과 점수 구간별 지원율>

- 80점 이상: 신청금액의 100%
- 60점 이상 80점 미만: 신청금액의 75%
- 40점 이상 60점 미만: 신청금액의 50%
- 40점 미만: 지원 배제

※ ①항에 따라 **차등 지원**하되, 근로자 1인당 지원한도(2025년 기준 930,000원)를 반영하여 지원금액 결정하며 ①항에 따른 지원결정액을 초과할 수는 없음

✓ 사업계획서 변경신고 의무화

지원금 신청 당시 제출하여 심사받은 “사업계획서” 상의 목적사업과 다른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변경 사업계획서**” 를 공단에 **제출하여 목적사업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받은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변경 신고 없이 부적합한 목적사업을 임의로 수행하여 여입 및 완수(반환)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의 지도·점검 등을 받을 수 있음

✓ 집행실태 점검 후 사후관리 절차

- 규정 미숙지, 단순 착오 등의 사유로 고의성 없는 목적 외 사용, 지출한 복지 비용에 대한 자료증빙 불가 시 : 여입
- 고의로 목적 외 사용,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완수

✓ 소급 지원신청에 대한 지원결정 기준

1개년도 이상 이전년도 출연분과 당해연도 출연(예정)분을 함께 지원신청한 경우,

☞ 총액(이전년도 출연분+당해연도 출연(예정)분)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결정

✓ 지원금 목적외 사용 등에 대한 지원제한 기준

① 거짓, 부정안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금이 부지급된 경우: 지원신청일부터 3년

② 거짓, 부정안 방법으로 지원받아 반환결정을 통보한 경우: 반환결정일부터 3년

③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으로 반환이 결정된 경우: 반환결정일부터 3년

✓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신청서 작성 유의사항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20. 1. 22., 2021. 1. 14., 2022. 5. 12., 2023. 5. 25.>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신청서

* 해당되는 사항 □에 √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기금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	
	기금인가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설립일	
	참여사업장수	수혜 중소기업 근로자수	
기금법인 참여사	사업장(1)	사업장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전화)	
		상시근로자수	업종(주생산품)
		출연금액	
	사업장(2)	사업장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전화)	
		상시근로자수	업종(주생산품)
		출연금액	

* 기금법인 참여사가 2개소를 초과할 경우에는 별도 용지에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대기업 (도급업체) 지방자치단체 현황	명칭	대표자
	소재지	전화

지원요건	기금출연
	1) <input type="checkbox"/>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 2) <input type="checkbox"/> 대기업(도급업체)가 중소기업(협력업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 3) <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

출연(예정) 금액	1) 출연:	원	지원신청 금액	원	1) 신청:	원
	2) 출연:	원			2) 신청:	원
	3) 출연:	원			3) 신청:	원

*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근로복지기본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되거나,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자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서 류	1. 중소기업확인서(상생형지역일자리외의 경우 지자체가 발급한 참여주체 확인 서류, 상생형 중견기업은 중견기업확인서) 각 1부 2. 기금법인의 정관 1부 3. 기금법인의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1부 4. 지원금 관련 사업계획서 1부 5. 공동기금 출연(예정)확인서 또는 재산목록 1부 6. 서약서 1부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가 위의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부동의] 합니다.

■ **출연유형이 다수일 경우, 출연금액을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작성란 세분화**

♠ 예시

A 공동기금법인 출연금(100,000,000원)

- 1) 참여기업 출연분 50,000,000원
- 2) 대기업(원청) 출연분 30,000,000원
- 3) 지방자치단체 출연분 20,000,000원

으로 구분하여 각각 기재

위의 출연분에 따른 신청액(50,000,000원)

- 1) 참여기업 출연분에 대한 지원신청액 25,000,000원
- 2) 대기업(원청) 출연분에 대한 지원신청액 15,000,000원
- 3) 지방자치단체 출연분에 대한 지원신청액 10,000,000원

으로 각각 기재

✓ 공동근로복지기금 사업계획서 개정서식 사용 필수

[별지 제2호의2서식] 공동근로복지기금 사업계획서

5. 복지개선에 미치는 정도 (복지사업 전·후 비교)

근로자 1인당 평균복지비용		
기금법인 평균 출연금액		
복지사업 평균 지출금액		
주요개선 내용	복지사업 이전	복지사업 이후

※ 기타 관련하여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내용을 기술합니다.

-

6. 소규모기업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 정도

- 기금법인 참여기업의 규모, 업종, 소재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규모기업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정도를 종합적으로 작성 합니다.

- 소규모기업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 정도 항목 신설**
 - 기금법인 참여기업의 규모, 업종의 특성, 소재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규모기업)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정도 기술

9. 지원신청 관련 서류 발급 방법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The screenshot shows the SMINFO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re are navigation tabs for '중소기업현황' (Current Status), '중소기업범위' (Scope), '중소기업확인서발급신청' (Application), and '고객센터' (Customer Center). The main banner features the title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and a button for '중소기업범위'. Below the banner, there are two main sections: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Application) and '개인사업자' (Individual Business). The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section includes a sub-section for '발급절차 안내' (Application Process Guide) with a list of steps: '개인사업자 범위' (Individual Business Scope), '온라인 발급절차(환제)' (Online Application Process (Refund)), and '오프라인 발급절차(예외)' (Offline Application Process (Exception)). The '개인사업자' section is titled '온라인 자료제출을 통한 확인서 발급절차' (Application Process for Confirmation Certificate via Online Data Submission) and lists '1. 온라인 제출자료' (1. Online Submission Data) with detailed instructions on document requirements and submission methods.

중견기업확인서 발급

정부24(www.gov.kr)

The screenshot shows the Government 24 website interface. The top navigation bar includes '정부24', '서비스' (Service), '보조금24' (Subsidy 24), '정책정보' (Policy Information), '기관정보' (Agency Information), and '고객센터' (Customer Center).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민원안내 및 신청' (Citizen Guide and Application) and '중견기업 확인서' (Medium Enterprise Confirmation Certificate). A table provides key information: '신청방법' (Application Method) is '인터넷' (Internet), '처리기간' (Processing Period) is '총 20일' (Total 20 days), '수수료' (Fee) is '수수료 없음' (No fee), and '구비서류' (Required Documents) is '있음(환급장)' (Yes (Refund Receipt)). A '신청하기' (Apply) button is visible. Below this, the '기본정보' (Basic Information) section states that this is for medium enterprises and provides a link to '접수 및 처리기관(별문서)' (Application and Processing Agency (Separate Document)). This section includes a table for '접수' (Application) and '처리' (Processing) with '한국중견기업연합회' (Korea Medium Enterprise Association) as the designated agency. A note explains that users can select an agency for application and information, and that the system will automatically select the appropriate agency based on the user's location. The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구비서류)' (Documents to be submitted at the time of application) section lists: '1.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Documents to be submitted by the applicant), '2. 개인정보 감시보고서 주주명부' (Shareholder Register and Personal Information Monitoring Report), and '3.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검정공무원 확인)' (Documents that do not need to be submitted (Confirmation by Certified Public Accountant)).

10.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심사위원회 평가표 개정

[별지 제3호의2서식] <신설 2021. 1. 14., 2022. 5. 12., 2023. 5. 25., 2025. 0. 00.>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심사위원회 평가표

기금법인명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 혜 근로자 수		근로자 1인당 출연금액	
설립일		지원이력	(신규, 기존)

평가항목	평가 기준	점 수				
		미흡	보통	양호	우수	탁월
사업계획 (40점)	■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의 타당성·구체성	2	4	6	8	10
	■ 사업계획(사업내용)의 정책부합성	2	4	6	8	10
	■ 복지개선에 미치는 정도(사업 전·후 비교)	2	4	6	8	10
	■ 소규모기업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 정도	2	4	6	8	10

평가항목	평가 기준	가중치	점 수					
			미흡	보통	양호	우수	탁월	
① 출연(예정)금 ÷ 신청액 (15점) * 지원대상이 둘 이상인 경우 합계점수의 평균	지원대상 합계 평균							
	사업주 ■ 2.00 이상 ■ 1.75 이상 ~ 2.00 미만	5점	3	3	6	9	12	15
	조성 ■ 1.50 이상 ~ 1.75 미만	4점	3	3	6	9	12	15
	대기업 ■ 1.25 이상 ~ 1.50 미만 ■ 1.00 이상 ~ 1.25 미만 ■ 1.00 미만	3점 2점 1점 제외	3	3	6	9	12	15
② 근로자수가 가장 많은 기업이 전체 근로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15점)	근로자가 가장 많은 기업의 근로자 수 ÷ 전체 근로자 수							
	■ 50% 미만 ■ 50% 이상 ~ 60% 미만 ■ 60% 이상 ~ 70% 미만 ■ 70% 이상 ~ 80% 미만 ■ 80% 이상 ~ 90% 미만 ■ 90% 이상	5점 4점 3점 2점 1점 제외	3	3	6	9	12	15
③ 참여기업 1개소 당 평균 근로자수 (15점)	전체 참여기업 근로자수 ÷ 전체 참여기업 수							
	■ 30명 미만 ■ 30명 이상 ~ 50명 미만 ■ 50명 이상 ~ 80명 미만 ■ 80명 이상 ~ 100명 미만 ■ 100명 이상	5점 4점 3점 2점 1점	3	3	6	9	12	15
④ 참여하는 기업수 (15점)	■ 30개 이상 ■ 10개 이상 ~ 30개 미만 ■ 5개 이상 ~ 10개 미만 ■ 3개 이상 ~ 5개 미만 ■ 2개	5점 4점 3점 2점 1점	3	3	6	9	12	15
	합계(100점)							점

년 월 일

위원 :

(서명 또는 인)

※ 심사대상 근로복지기금이 다수일 경우 위 심사위원회 평가표 양식에 근거하여 작성된 목록자료를 근거로 심사위원회는 평가 할 수 있다.

[심사평가 항목 및 주요 기준]

더 취약한 소규모기업 공동기금 확산 지원을 위해
평가항목 개정 및 배점 조정

■ 정성평가(30 → 40점)

- 소규모기업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정도 신설

■ 정량평가(70 → 60점)

- 지원 신청액 대비 출연(예정)금이 많을 수록
높은 점수 부여(25점 → 15점)

- 근로자 수가 참여기업 1개소에 편중되어 있는 경우
낮은 평가점수 부여

- 참여기업 1개소 당 평균 근로자수가 적을 수록
높은 평가점수 부여

- 참여하는 기업수가 많을수록 높은 평가점수 부여